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스포츠클럽 운영 규정

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스포츠클럽 운영 규정

제정 2021.06.23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사업은 부산스포츠클럽(이하 "스포츠클럽"이라 한다)이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스포츠클럽은 청소년과 시민에게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발 적인 참여를 유도해 지역의 건강하고 건전한 체육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전문 체육과 생활체육을 연계하여 우수선수 발굴·육성 등 부산 체육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스포츠클럽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.

- 1. 지역사회 체육문화 보급 및 건강증진 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
- 2. 체육활동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우수선수 양성과 관련된 사업
- 3. 우수선수 발굴 및 클럽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경기대회 개최
- 4. 타 기관 및 단체가 주최하는 경기대회 참가에 관련된 사업
- 5.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타지역간의 교류대회 개최 및 참가
- 6. 체육활동으로 사회 환워과 관련된 사업운영
- 7. 스포츠클럽 운영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
- 8. 기타 스포츠클럽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 사업

제4조(수익사업) 스포츠클럽은 제3조에 규정한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의 본질을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 2 장 스포츠클럽 운영

- **제5조(운영조직)** 스포츠클럽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운영조직을 둔다.
 - 1. 스포츠클럽은 부산광역시체육회(이하 "체육회"라 한다)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 에서 관할한다.
 - 2. 단장(체육회 사무처장)
 - 3. 관리담당 직원 1명을 둔다.
- **제6조(운영종목)** ① 운영종목은 기초종목 육성을 위해 육상, 수영, 체조는 매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기타 필요종목은 체육회와 해당종목의 회원종목단체와 혐의에 의해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전문선수 발굴·육성을 위해 육상, 수영, 체조 종목에 한하여 영재교실을 운영 할 수 있으며, 회원의 선발방법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.
- **제7조(교육방법)** ① 청소년회원은 정규 학교 수업 참석을 의무화하고, 방과 후 또 는 주말을 이용하여 교육한다.
 - ② 회원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다.
- **제8조(프로그램 운영 및 대회참가)** 프로그램 운영 및 대회참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1. 종목별 교육대상자의 참여율 및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편성한다.
 - 2. 청소년회원들이 대회에 참가를 위해 정규수업 시간을 할애하여야 할 경우 해당소속 학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- 3. 프로그램별 리그대회,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대회, 특별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회원간의 친목도모 및 우수선수 발굴을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한다.
 - 4. 우수선수 발굴 및 청소년회원의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종목별 대회에 가능한 참가를 많이 한다.
- 제9조(교육장소) ① 가능한 부산지역 내 공공스포츠 시설을 이용하여 시설물에 대한 활용도를 최대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최소비용 또는 무상으로 사용

- 할 수 있도록 한다. 단,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로 민간체육시설을 이용 할 수 있다.
- ② 가급적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가능한 시설을 이용하여 회원들의 접근이 용이한 시설을 우선 선정한다.
- 제10조(회비) ① 회비금액은 종목별로 매년 수립되는 사업계획에 의거 결정되며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 - ② 운영상황에 따라 회비 징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원종목단체와 협의 하여 무료로 운영 할 수 있다.
- 제11조(회비감면) 회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%를 감면 할수 있다.
 - 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(단, 재등록시 2개월 단위로 확인서 제출)
 - 2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- 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- 4.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5.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- 5.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
 - 6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고엽 제후유증환자·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
 - 7. 「부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」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 정에 속하는 자(다자녀카드 및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)
 - 8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)
- 제12조(회비의 환불) 회원이 회비환불을 요구할 경우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의 제18조 교습비등의 반환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회비를 환불한다.

- 1. 1개월 이내 : 총 교습시간의 1/3경과 전, 총 교습시간의 1/2경과 전,
 총 교습시간의 1/2경과 후로 구분하여 반환한다.
 - 총 교습시간의 1/3경과 전 ☞ 납부한 교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
 - 총 교습시간의 1/2경과 전 ☞ 납부한 교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
 - 총 교습시간의 1/2경과 후 ☞ 반환하지 않음
- 2. 1개월 초과 : 반환사유 발생 월의 교습비 반환액(1개월 이내 수강료 반환기준 적용) + 나머지 월 교습비
- 제13조(보험가입) ① 회원들의 체육활동 중 발생하는 운동손상에 대처하고 안 전한 체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 - ② 특별프로그램 및 대회참가 시 타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경우 이동간의 회원안전을 위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 - ③ 보험적용 기간은 회원이 스포츠클럽에 가입한 시점부터 탈퇴 할 때까지로 하며, 기타 보험과 관련된 세부 운영은 해당보험사와 협의하여 운영한다.
- 제14조(운영규정 변경)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에서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부산광역시체육회 이사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- **제15조(관리)** ① 회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회원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하며, 재산의 훼손 또는 망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다.
 - ②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하여야 하며,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아니되다.
 - ③ 경기기록, 지도일지 등 주요사항은 기록으로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- 제16조(해산) ① 스포츠클럽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해산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.
 - ② 해산 시 잔여재산(국가보조금, 부산광역시보조금 제외)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스포츠클럽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 또는 체육회에서 관리 할 수 있다.

제 3 장 재정 및 회계

- 제17조(사업비) 사업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 - 1. 국가보조금 :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공모사업비, 목적사업비 등
 - 2. 부산광역시보조금 : 스포츠클럽 사업운영을 위한 시비보조금
 - 3. 회비수익금 : 체육프로그램 수강을 위한 회원 회비수익금
 - 4. 기타수익금 : 대회개최에 따른 참가비, 찬조금 등
- 제18조(회계연도) 스포츠클럽의 회계연도는 정부 및 부산광역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
- 제19조(예산편성) ① 스포츠클럽의 세입·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 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한다.
 - ② 경상비의 예산편성 및 지출을 지양하고 프로그램운영, 대회개최·참가 등 사업에 관련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지출한다.
- **제20조(회계처리)** 스포츠클럽의 모든 회계처리는 각 사업비에 맞는 보조금 관리규정 및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운영규정에 의해 회계처리 된다.

제 4 장 기금 운영

- 제21조(기금목적) 스포츠클럽의 기금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금 및 적립금을 조성하여 클럽의 자립도를 높이고,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2조(기금조성) 스포츠클럽 기금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조성한다.
 - 1. 회원의 회비수익금
 - 2. 스포츠클럽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및 행사 수익금
 - 3. 독지가의 찬조금
 - 4. 기타 잡수입금
- 제23조(기금사업) 스포츠클럽 기금으로 아래와 같은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.

- 1. 스포츠클럽 프로그램 활성화에 필요한 제반적인 사업
- 2. 우수전문선수 육성 및 우수 지도자 지원을 위한 사업
- 3. 스포츠클럽 자립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사업
- 4. 기타 스포츠클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- 제24조(기금 운영 원칙) ① 스포츠클럽 기금은 세입 내 세출의 건전재정 원칙을 적용한다.
 - ② 기금은 특별회계로 운영한다.
 - ③ 세입 및 세출 절차는 체육회 사무처 운영규정을 적용한다.
- 제25조(기금 관리운영) ① 기금은 금융기관 예치 및 기타 증식 사업을 통해 관리운영 할 수 있다.
 - ② 기금 관리운영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.
- 제26조(기금 사용범위) 기금사용 시 제2조 목적과 제3조 사업을 준하여 사용계획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 할 수 있다.

제 5 장 회원 및 지도자

- 제27조(회원의 구분) ① 스포츠클럽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 - 1. 유소년회원 : 6세 이상 8세 미만인 회원
 - 2. 청소년회원 : 8세 이상 20세 미만인 회원
 - 3. 성인회원 : 20세 이상인 회원
 - ② 별도의 회원 구분방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 할 수 있다.
- **제28조(회원모집 및 선발)** ① 회원은 부산광역시내 거주하는 유소년, 청소년, 성인 회원으로 하며, 성인회원은 전체회원의 30%를 넘지 않아야 한다.
 - ② 모집방법은 인터넷, 언론매체, 홍보물 등을 통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하고, 필요에 의해 교육청과 협의하여 특정학교 학생들로만 모집도 가능하다.
 - ③ 회원은 수시로 모집하며 프로그램별 운영에 적합한 인원을 모집한다.
 - ④ 프로그램별 필요에 따라 별도의 선발(테스트) 기준 통해 회원을 선발 할

수 있다.

- 제29조(회원의 자격) ① 스포츠클럽의 회원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입회신청 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(단, 회비 미징구 프로그램일 경우 입 회신청서만 제출한 자로 한다.)
 - ② 입회신청 작성 시 반드시 스포츠상해 보험가입을 동의해야 하며, 동의하지 않을 시 가입이 불가하다.
- 제30조(회원의 권리) 회원은 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기 할 수 있다.
- 제31조(회원의 의무)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,
 - 1. 스포츠클럽의 운영규정 및 제 규약의 준수
 - 2. 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
 - 3. 회비의 납부
 - 4. 기타 위원회가 전하는 사항
- 제32조(회원의 탈퇴) 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.
- 제33조(지도자 선발 및 채용) ① 스포츠클럽의 지도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선발하다.
 - ② 지도자를 채용 할 때는 아래와 같은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선발한다.
 - 1.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
 - 2. 해당종목 국가체육지도자자격증 소지자
 - 3.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수상 경력과 국가대표 선수 또는 시·도 대표선수·지도 자활동 경험자에 대해서는 지도자 선발 시 우대한다.
 - ③ 제1항부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해 특별한 경력이 있는 자의 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특별채용 할 수 있다.
 - 1.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중에서 해당종목 국가체육지 도자자격증(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 자격증)
 - 전문스포츠지도사,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
- 제33조의 2(정년) 지도자의 정년은 만60세로 정한다.

- 제33조의 3(채용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자로 채용할 수 없다.
 - 1.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2. 스포츠 4대악(조직사유화, 입시비리, 승부조작, (성)폭력) 및 금품·향응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로 사법기관의 판결 또는 본회를 비롯한 체육단체, 타 기관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
 - 3. 각종 체육관련 단체(종목단체, 체육회 등)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
 - 4.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

제33조의 4(구비서류) ① 지도자를 채용 시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.

- 1. 이력서 1부
- 2. 주민등록등본 1부
- 3. 경기실적·지도실적증명서 1부
- 4. 자격증 사본 1부
- 5. 신체검사서 1부
- 6. 범죄사실확인서 1부
- 7. 징계유무확인서 1부

제33조의 5(계약기간)

- ① 지도자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.
- ② 계약기간은 지도실적 및 지도평가에 따라 연장할 수 있되 매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③ 지도실적 및 지도평가는 연말에 별도 성과평가에 의해 결정된다.
- 제33조의 6(면직 및 해임) 지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면직 또는 해임 할 수 있다.
 - 1.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는 때
 - 2.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
 - 3. 채용 결격사유가 채용 후에 발견된 때
 - 4. 지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되어 담당지도

- 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
- 5. 스포츠 4대악(조직사유화, 입시비리, 승부조작, (성)폭력) 및 금품·향응수수 등부적절한 행위로 사법기관의 판결 또는 징계 받은 경우
- 6. 각종 체육관련 단체(종목단체, 체육회 등)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
- 7.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하거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제34조(지도자 구분 및 보수 지급기준) 지도자의 근무형태에 따라 보수 및 지급시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.
 - 1. 지도자는 상근지도자, 비상근지도자로 구분한다.
 - 2. 지도자의 급여 및 수당 지급기준은 [별표 1]과 같다.
 - 3. 지도준비수당은 수업시간 외 프로그램 준비 및 회원관리 시간에 대한 수당이며, 1시간 35,000원으로 최대 주1회 2시간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.(단, 당월결과물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 할 수 있다.)
 - 4. 교육훈련장이 2개소 이상인 경우 1개 지역 당 월 100,000원을 추가 지급 할수 있다.
 - 5. 보수지급일은 지도자가 근무한 익월 5일로 한다.
- 제35조(지도자 임무) 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 - 1. 상근지도자
 - 비상근지도자의 임무와 동일한 임무
 - 타 프로그램 현장점검
 - 스포츠클럽 연간계획 및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
 - 기타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반 업무
 - 2. 비상근지도자
 - 회원의 훈련지도 및 관리
 - 종목별 프로그램 훈련계획서(연간, 월간)
 - 교육일지 작성

- 회원 출석부 작성
- 스포츠클럽 특별프로그램 참가
- 각종 대회 참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
-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체육회 복무규정을 준용한다.
- 3. 보조지도자
 - 회원의 훈련지도 및 안전관리
 - 그 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보조

부 칙(2021.06.23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지도자 보수 기준표 (제34조 관련)

(단위 : 원)

구분	기본급	수당		자격증	
상 근 지도자	2,000,000	정액급식비	140,000	국가체육지도자자격증 (전문스포츠지도사, 생활스포츠지도사 우대)	
		관내출장여 비	160,000		
		명절수당	기본급60% 연간 2회 (설, 추석)		
비상근 지도자	_	1시간	35,000	0 = - 1 - 1 - 1 - 11 / 11 / 11 / 11 / 11	
		1일	70,000		

(비고)

- 1. 상근지도자 재임용시 공무원 임금 상승률에 준하여 기본급을 조정한다.
- 2. 상근지도자의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시는 최저임금에 따른다.
- 3. 비상근지도자 수당은 최대 1일 2시간을 지급한다.